

「군포도시공사 공무국외여행」 시행내규 일부개정 내규를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군포도시공사 사장 원명



2021년 9월 6일

군포도시공사 내규 제52호

## 군포도시공사 공무국외여행 시행내규 일부개정 내규

군포도시공사 공무국외여행 시행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# 제15조(사후관리 등)

제3항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.

- ③ 국외출장자는 공무상 국외출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항공마일리지를 확인하고 결과보고서에 신고해야 하며 공무로 발생한 마일리지의 사적 사용을 금지한다.

부 칙

이 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	관	부	서	경	영	지	원	부
입	안	직	위	경	영	지	원	부
		성	명					
자	담	당	자	성	명	장	소	현

## 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     행	개      정      안	비      고
<p>제15조(사후관리 등) ① ~ ② &lt;생략&gt;</p> <p>③ &lt;신설&gt;</p>	<p>제15조(사후관리 등) ① ~ ② &lt;현행과 같음&gt;</p> <p>③ <u>국외출장자는 공무상 국외출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항공마일리지를 확인하고 결과보고서에 신고해야 하며 공무로 발생한 마일리지의 사적 사용을 금지한다.</u></p>	